

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[시행 2023.05.15]
(일부개정) 2023.05.15 조례 제2684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다문화교류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63-640-4632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.
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 -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- "결혼이민자등"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 - 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- "보호자"란 다문화가족 자녀의 친권자 ·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자녀를 사실상 보호 ·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<신설 2023.5.15.>
- "다문화가족 아동"이란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9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<신설 2023.5.15.>
- "육아지원금"이란 다문화가족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원을 말한다.<신설 2023.5.15.>

제4조의2(육아지원금)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아동과 그 보호자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23.5.15.>

- ② 육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실군 다문화 가족 육아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 ·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23.5.15.>
- ③ 군수는 지원 대상 보호자에 대하여 신청한 달이 속한 달부터 매월 1인당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23.5.15.>
- ④ 육아지원금의 지원 정지 · 상실 · 환수 등 사후관리는 아동수당법에 따른다.<신설 2023.5.15.>

부칙 <조례 제2167호, 2015.9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252호, 2016.7.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563호, 2021.5.2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684호, 2023.5.1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/서식

임실군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신규(변경) 신청서
